

V.기타사례

신청인을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의 발행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었으므로
문제된 기사를 삭제,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판매·배포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8. 3. 18.자 결정 (98카합87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998년 3월 18일 한국방송공사 남 PD가 자신이 주사파로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한국논단> 1998년 3월호 기사와 관련,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인쇄배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않고 이 잡지를 판매·배포해서는 안되며, 문제된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발행 배포하거나, 정기간행물에 게재 또는 방송하여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을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 부분의 발행·판매·배포를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문제된 기사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게재한 인쇄물을 발행·배포하거나 정기간행물에 게재 또는 방송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국논단이 1998년 3월호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뚱 경찰은 똥으로 연출하는 공영 방송 KBS] 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주사파로서 。다큐멘터리 극장.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신청인은 한국논단 3월호에 대해 출판물인쇄배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남PD는 1998년 3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재불성립결정되자(98서울중재28)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의 경우 인용결정을 내렸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5천만원의 지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決 定 文

사 건 : 98카합878 출판물인쇄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인 : 남

성남시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3. 이

서울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주 문 :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신청인 이 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이 편집한 월간지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월간지 및 그 인쇄물 지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위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월간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 위 월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에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 및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을 위반하여 인쇄물을 편집,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인쇄물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이 게재된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 그 인쇄물의 보관을 풀고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이 게재된 부분을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에는 그 인쇄물을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가항,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또는 방송물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신청인 이 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이 편집한 월간지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신청인들의 위 월간지와 그에 대한 인쇄물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신청인 이 은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가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 4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책(단행본) 및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취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4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입사한 이래 1993.5.부터 1994.까지 총 68회에 걸쳐 방영된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극장. 의 책임프로듀서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한국방송공사의 책임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신청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월간지 <한국논단>을 제작,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 이 는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이 이 작성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를 위 <한국논단> 1998년 3월호 (통권 제103호 -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고만 한다)의 92면부터 98면까지 사이에 게재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청인이 주사파(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여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약칭하는 말로 사용된다)로서 위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극장. 을 통해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 부분}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주사파로 묘사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을 게재한 이 사건 월간지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월간지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의 발행, 판매,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서는 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위 한국방송공사의 여러 프로그램의 내용도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은 채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를 비난하면서도, 유독 。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신청인의 이름만 게재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또 다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전체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나, 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월간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 관련된 이 사건 월간지의 광고 문안은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 혹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일 뿐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또 다시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나,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자체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만으로는 신청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다만 이 사건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과 합쳐져 그 게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다),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장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하여 1998. 2. 5. 방영한 프로그램 。 이것이 인생이다. 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악으로, 좌익 공산세력을 선으로 묘사하는 등 지나치게 좌익 공산세력의 입장에서 위 프로그램 주인공의 인생을 조명하였고,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부분은 이를 건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 혹은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 프로그램의 비난 내용과 별개로 신청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책임프로듀서로서 제작한 위 。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을 조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사 부분에서 그 허구성을 건전하게 비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 부분에는 위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인 신청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있을 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논평기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그 논평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였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사파로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검증하였거나 피신청인들이 그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들은, 이미 발행된 이 사건 월간지는 판매 및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건 월간지를 더 이상 발행할 계획도 없으므로 그 발행, 판매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 주장만에 기하여 이 사건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이 주문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또는 방송물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판장 판사 이 주 홍

판사 박 성 수

판사 곽 병 훈

<제1목록>

월간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의 표지 및 차례, 본문 92면에서 98면에 걸쳐 보도한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라는 제하의 기사

<제2목록>

제96면 중

1. 제목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 방송” 부분

2. 그 아래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때 1TV의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 는 부분

3. 그 아래 본문 중 “이같은 배경에는 ^수령에 대한 불경죄}를 염려한 주사파들의 배려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는 부분

<제3목록>

1. 남 프로듀서가 주사파라는 내용

2. 남 프로듀서가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거나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그 외 어떠한 형태로든 친북활동을 벌였다는 내용

3. 남 프로듀서가 책임프로듀서로 일한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극장. 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거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사태 등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하였다는 내용. 끝.

<제4목록>

1. 남 프로듀서가 주사파라는 내용

2. 남 프로듀서가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거나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그 외 어떠한 형태로든 친북활동을 벌였다는 내용

3. 남 프로듀서가 책임프로듀서로 일한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극장. 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거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사태 등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하였다는 내용

4. 그 외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끝.□

문제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등으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판매,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7. 4.자 결정 (98카합163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송승찬 부장판사)는 1998년 7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 목사 등이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동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수 없다. 또한 동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 반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유인물의 제작 및 반포,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판매, 대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들이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청인들의 명예가 침해될 것이므로 동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행위와 이를 게재한 인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1998년 4월 5일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중 ^길 잃은 목자)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신청인 김 가 부정축재를 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시 금품을 뿌렸으며, 성추문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들은 법원에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위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1998년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결과 불성립처리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7월 16일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決 定 文

사 건 : 98카합1639 방영등금지가처분

신청인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5 정우빌딩 11층

대표자 감독회장

2.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대표자 당회장

3. 김

4. 배

신청인 2., 3., 4. 주소 서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2. 윤

서울

3. 배

인천

(현재 서울구치소 재감 중)

4. 배

인천

5. 박

위 같은 곳

6. 곽

서울

7. 신

서울

8. 오

인천

송달장소 인천

피신청인 1., 2.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최재경, 이재후, 박정택

주 문 : 1.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을 위하여 공동보증으로 금 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윤 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2)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 배 , 룡, 박 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내용을, 피신청인 곽노홍은 같은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게재한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제작,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윤 은 각 금 10,000,000원을, 피신청인 배 , 룡, 박 , 곽 은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신 , 오 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신청인들과 위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위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신 , 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의 가.의 (1)과 같은 재판 및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윤 은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책 및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성명서 등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고, 같은 목록 기재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의 부근에 내걸거나 서면 또는 구두, 기타의 수단으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취지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신청인들에게 각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재판.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신청인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 윤 이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같은 제1목록 기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신청인 문화방송이 1998. 4. 5. 21:40경부터 이를 방영한 사실, 피신청인 배 , 룡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의 일부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제작, 반포하고 위 룡, 박 은 같은 내용의 광고를 1998. 2. 22.자 [한국교회신문] 제1면에 게재한 사실, 피신청인 광 은 같은 목록 제1, 3항 기재의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제작, 반포하고, 피신청인 문화방송의 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유인물의 제작 및 반포, 광고의 게재 경위 및 그 주요 내용, 신청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유인물의 제작 및 반포,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문화방송, 윤 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타인에게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행위의, 피신청인 배 , 룡, 박 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내용이 게재된, 피신청인 광 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게재된 각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의 각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신청인들이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신청인들의 명예가 침해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신청인들이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 문화방송, 윤 은 각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 피신청인 배 , 룡, 박 , 광 은 각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및 피신청인 신 , 오 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각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문화방송, 윤 , 배 , 룡, 박 , 광 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신 , 오 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4.

재판장 판사 송 승 찬

판사 이 철 의

판사 정 정 미

<제1목록>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MBC텔레비전을 통하여 1998. 4. 5. 21:40경부터 방영한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중 ^길 잃은 목자}라는 제하의 방송프로그램.

<제2목록>

1. 신청인 김 가 개인적으로 5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부정축재를 하거나, 서울 광진구 빌라를 금란교회와 사전 협의없이 금 1,000,000,000원을 주고 미리 구입한 뒤 금란교회로부터 추인받은 것이 진실이라는 취지.
2. 신청인 김 가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1994.과 1996. 두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가진 목사 및 장로들에게 돈을 뿌린 것이 진실이라는 취지.
3. 신청인 김 가 1977.부터 피신청인 배 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1977. 11.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이를 고백하였으며, 피신청인 배 에게 금 350,000,000원을 준 것이 진실이라는 취지.

<제3목록>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금란교회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5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부정축재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거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
2. 김 목사가 1,200,000,000원이 넘는 호화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태리제 호화가 구 200,000,000원 어치나 들여 놓고 아방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김 목사 일가족이 5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등의 내용
3. 김 목사가 등기부상 밝혀진 것만 해도 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등 축재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
4. 김 목사가 서울 광진구 빌라를 금란교회와 사전 협의없이 금 1,000,000,000원이나 주고서 미리 구입한 뒤 나중에 금란교회로부터 추인을 받았다는 내용
5.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1994.과 1996. 두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가진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엄청난 돈을 뿌렸다는 내용
6. 김 목사가 1998. 10.에 있는 대한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선거에서도 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내용
7. 김 목사가 배 와 간에 1977.부터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
8. 김 목사가 1997. 11.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배 와의 관계를 고백하였는데, 그 뒤 금란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내용을 각서(확인서)에 쓰게 하고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
9. 김 목사가 350,000,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난 10년 동안 배 에게 주었다는 내용

10. 김 목사가 1997. 배 가 인천 소재 우성아파트를 살 때도 70,000,000원을 지원했다는 내용

11.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원로들이 요청한 회의소집을 4차례나 거부했다는 내용

12. 김 목사가 1997. 12.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제5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배 를 처제 또는 사촌동생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 및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끝.
□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 자체는 언론자유에 속하지만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할 때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8. 11. 11.자 결정 (98카합344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998년 11월 11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최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맥상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좌파적 인물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지 여부를 언론이 검증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대상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인데도 이를 문제삼아 대체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독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기사내용 중 삭제해야 할 10가지 부분을 명시했다.

최교수는 <월간조선>이 1998년 11월호에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제하의 기사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등 자신의 저술내용을 20여 곳에 걸쳐 왜곡, 한국전쟁을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하자,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해 발행판매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반론보도청구소송의 경우 조선일보가 최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취하였다.

한편, 최교수는 <월간조선> 11월호의 보도내용과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를 게재한 조선일보, 11월 5일자 주간조선의 보도에 대해 1998년 11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 신청을 했으나 모두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98서울중재273~278).

決 定 文

사 건 : 98카합3441 출판물 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주 문 :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편집한 월간지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 제 224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월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한 후 위 월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판독할 수 없게 삭제한 후에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단행본,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월간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내용이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위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책(단행본) 및 주간지 또는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등의 인쇄물을 가편집, 발행, 판매, 반포, 대여, 사용케 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본 원칙

가. 우리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하고 있고, 그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임이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국가정책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함이 당연하다.

또한,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므로, 신청인이 과연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저서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고위 공직 임명자에 대한 취임 전 청문회 절차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그와 같은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더욱 클 것이다.

나. 그러나,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헌법 제21조 제4항), 고위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든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의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견해의 표명에 대하여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중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되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법체계(국가보안법 제7조)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기타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정기간행물 기사의 표제는 그 기사 본문과 합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됨이 원칙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내용이나 문구를 전체 기사의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그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상이 왜곡될 수 있다면, 설령 그 표제가 기사의 대상 인물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 문구를 그대로 인용,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의 경우에도 그 저서의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발췌된 부분만을 읽음으로 해서 사실적 주장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224호,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 한다) 중 206쪽 이하에 실린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및 위 월간지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보면, 그 내용 중 적어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하 ^신청인의 제1저서)라고 한다)과 같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하 ^신청인의 제2저서)라고 한다)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앞 뒤 문맥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신청인을 더 좌파적 인물로 묘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표지에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목차에는 “ ‘6·25 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 ‘남진은 민족해방전쟁, 북진은 가공할 사태’ ” 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06쪽 윗부분에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본문보다 작은 활자의 박스기사가 있는 바, 그 안에는 “...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본문 211쪽 3단에는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 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는 부분과 “...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부분이 비록 신청인의 제1저서 중 특정부분(76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부분 바로 앞에는 “김일성은 ... 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 ” 이라고 표현하여 김일성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역사적 결단’ 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 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임이 분명한에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문제삼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대체목으로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 ‘남진은 민족해방전쟁 ...’ ” 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기사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 ‘개전 초반 민족해방전쟁 ...’ ” 이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 라는 요지로 해석했다.” 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 제2저서는 물론 다른 저서에서도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단지 제1저서의 125쪽부터 126쪽까지에서 한국전쟁을 네가지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고유의 성격을 서술하면서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 이었던 반면 ...” 이라고 논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른바 ‘민족해방전쟁’ 이라는 용어를 ‘북한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 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제1저서에서 위 용어 앞뒤에 부가한 작은따옴표를 생략하여 민족해방전쟁이란 용어가 마치 신청인의 생각 그 자체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히도록 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제1저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 중공군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 ‘... 북진은 가공할 사태’ ” 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 ‘북진은 가공할 사태’ ” 라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문 208

쪽 1단에는 “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 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 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문 209쪽 1단에는 “ ‘북진은 가공할 사태’ ” 라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 초기 한국전쟁이 … 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 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 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문 210쪽의 1, 2단에는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에서 이 사건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위 저서 128쪽은 “북진강경론자의 선봉 텔레스 등을 필두로 하여 맥아더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트루먼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당국은, 특히 그들의 강경파는 친미반공정부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만주에 원자탄 투하나 필요한 중국해안지역에 미군의 지원에 의한 국민당군의 상륙을 포함하는, 중국대륙으로까지의 확전을 포함하여 중공정권을 궤멸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을 전쟁정책 속에 포함하고 있었다. 만약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소련의 한국전 참전과 소련군의 서유럽 국가와의 전쟁을 강제하는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 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하는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라고 논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의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상 위 ‘이것’ 은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3차대전이 38도선 이상의 북진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기사부분과 같이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의 제1저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제하면서 위 ‘이것’ 을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 으로 대체하여 위 저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기사 중 위 제2항에서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신청인의 이 사건 제 1, 2저서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인용 후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비판형식으로 개진한 것으로 군데군데 인용상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위 기사는 정치학자가 아닌 기자가 정치학의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독자를 상대로 하여 통상인의 수준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자에게 정치학자 수준의 분석을 거친 완벽한 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저서나 논문은 집필자의 집필 당시의 내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외면적 표현형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 검증대상인 인물이 더 유명할수록, 더 고위직에 있을수록 그 인물 개인의 명예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나머지 기사 부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기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1998. 11. 11.

재판장 판사 신 영 철

판사 박 성 수

판사 곽 병 훈

<제1목록>

1. 표지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제목
2. 목차의 “6·25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남진(南進)은 민족해방전쟁, 북진(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3. 본문 206쪽 윗부분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박스 기사 중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부분
4. 본문 207쪽 윗부분의 “개전(開戰) 초반 민족해방전쟁, 북진은 가공할 사태” 부분
5. 본문 208쪽 1단의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 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 부분
6. 본문 209쪽 1단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 부분
7. 본문 210쪽 1단의 “남진은 민족해방전쟁” 부분
8. 본문 210쪽 1단의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국제전으로 될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 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 부분
9. 본문 210쪽 1, 2단의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부분
10. 본문 211쪽 3단의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 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부분과 같은 곳의 “...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부분

<제2목록>

1. 최 교수가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2. 최 교수가 6·25를 호의적이라거나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3. 최 교수가 6·25의 발발책임이 김일성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4. 최 교수가 6·25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5. 최 교수가 6·25가 남한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6. 최 교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취지의 내용
7. 최 교수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8. 최 교수가 미·소가 합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끝.□